

「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29(월) 평창군수(산림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산림과장 김철환)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'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'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를 “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입장제한) 휴양림 관리·운영자는 산불방지,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휴양림관리·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삭제

③ 삭제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